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숭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0

발의연월일: 2021. 3. 11.

발 의 자: 황보승희·허은아·이 용

유경준 · 김용판 · 서범수

유두현 • 권명호 • 정동만

김기현 • 한무경 • 박성민

윤희숙 • 박성중 • 엄태영

김영식 • 김승수 • 신원식

이종성 · 서일준 · 양금희

전봉민 · 강대식 의원

(23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 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 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5년"을 "8년"으로,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① ~ ③ (생 략)	방지대책) ① ~ ③ (현행과 같
	승)
<u> <신 설></u>	④ 제2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
	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
	<u>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u>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
	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	제57조(벌칙) ①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는 <u>5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u>	<u>8년</u> <u>8천</u>
<u>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원
<u><신 설></u>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자가 제1항의 죄
	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
	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②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